

食品衛生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지난 72年 1月 5日 保社部는 不正食品을 根絕키 為해
食品衛生法施行規則中 改正令을 保社部令 第387号로 公
布하였는데 그 改正된 全文을 이에 掲載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 [별지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7]중 3. 제조업·가공업·처리업 시설 기준의
(가)공통시설기준에 "(19)"를 별지 3과 같이 신설
하고, 동 기준의 (나)업종별시설기준의 (1)빙과제
조업, (3)두부류제조업, (5)과자류제조업, (9)
식용유·지제조업, (12)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업,
(13)다류제조업, (14)청량음료 제조업, (16)장류
제조업 및 (17)식초제조업을 각각 별지 4와 같이 한
다.

별지 1
별표 1 : 화학적합성품
1. 제피알데린
2. 고급케톤류
3. 과망간산칼륨
4. 과산화베조일(희석)
5. 과산화수소
6. 과황산암모늄
7. 5'-구아닐산나트륨
8. 구연산(결정)
9. 구연산(무수)
10. 구연산나트륨
11. 구연산철
12. 구연산철암모늄
13. 구연산칼슘
14. 구소수지
15. 규조토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소는 1972년 4월 30일 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97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적합성품으로 지정된 과산화질소, 팔루콘산, 니트로후라존·니트로후릴아크릴산아미드·동

16. 칼포고노민 타릭 분
 17. 칼루친산 칼슘
 18. 칼루타민 산나트륨
 19. 글리세린
 20. 글리세린 치방산에스텔
 21. 글리산 22-나코친산
 23. 나코친산아미드
 24. 매두 인지질 (매두 래시친)
 25. 매히드로초산
 26. 매이드로초산 나트륨
 27. 풍 쿠로토휘린 나트륨
 28. 더페조 일차아민
 29. 더페조 일차 아민임산염
 30. 더부진 히드록시톨루엔
 31. 락분류 (나만, 일반적으로 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
 32. L-라이신 임산염
 33. 5'-리보누크레 오타이드나트륨
 34. 5'-리보누크레 오타이드칼슘
 35. DL-매치오닌
 36. L-매치오닌
 37. 매질센투로오스
 38. 매타인산나트륨
 39. 매타인산칼륨
 40. 메타중이황산칼륨
 41. d1-엔톨
 42. l-엔톨
 43. 면유침가알카리제
 44. 명반
 45. 물식자산프로필
 46. 물호밀치방산염
 47. 무수아황산
 48. 마니딘
 49. L-바린
 50. 방향족 알데히드류 (나만 일반적으로 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
 51. 방향족 알코올류
 52. 벡토도
 53. 벤조인테일
 54. 베질 알코올
 55. 베토나이드
 56. 부질프라린부질글리코레이트
 57. 부질히드록시아니졸
 58. 브롬산칼륨
 59. 비타민 A 유
 60. 분말비타민 A
 61. 유성비타민 A 치방산에스텔
 62. 비타민 B₁나프탈린-1,5-디설폰산염 (치아민나프탈린-1,5-디설폰산염)
 63. 비타민 B₁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치아민산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64. 비타민 B₁라우릴황산염 (치아민라우릴황산염)
 65. 비타민 B₁로단산염 (치아민로단산염)
 66. 비타민 B₁염산염 (치아민 염산염)
 67. 비타민 B₁질산염 (치아민 질산염)
 68. 비타민 B₁프탈린염 (치아민프탈린염)
 69. 비타민 B₂(리보후라빈)
 70. 비타민 B₂인산에스텔나트륨 (리보후라빈인산에스텔나트륨)
 71. 비타민 B₆염산염 (파리독신 염산염)
 72. 비타민 B₁₂ (씨아노코발아민)
 73.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
 74. 비타민 D₂ (칼시웨롤)
 75. 비타민 D₃ (코레 칼시 활롤)
 76. 비타민 E (d1-2-토코페롤)
 77. 빙초산
 78. 사파산
 79. 사파산나트륨
 80. 삭카린나트륨
 81. 산성백토
 82. 산성아황산나트륨
 83. 산성피로인산나트륨
 84. 살리센산
 85. 3, 2 산화철
 86. D-소르비톨 (D-소르비트)
 87. D-소르비톨액 (D-소르비트액)
 88. 소르비단지방산에스텔
 89. 소트빈산
 90. 소트빈산칼륨
 91. 소명반
 92. 소암보늄명반
 93. 수산
 94. 수산화나트륨
 95. 수산화나트륨(결정)

96. 수산화칼슘
 97. 수용성안나토
 98. 스테아릴젖산칼슘
 99. DL-쓰레오닌
 100. L-쓰레오닌
 101. 시트랄
 102. 식용색소 녹색제3호 (화스트그린 FCF)
 103. 식용색소 자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104. 식용색소 자색제1호 (애시드바이오텔 6B)
 105. 식용색소 적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106. 식용색소 적색제2호 (아마란쓰)
 107. 식용색소 적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108. 식용색소 적색제3호 (엘리쓰로신)
 109. 식용색소 적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110. 식용색소 청색제1호 (브릴리안트블루 FCF)
 111. 식용색소 청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112. 식용색소 청색제2호 (인디고 카르민)
 113. 식용색소 청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114. 식용색소 황색제4호 (타아트라신)
 115. 식용색소 황색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116. 식용색소 황색제5호 (선셀엘로우 FCF)
 117. 식용색소 황색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118. DL-알라닌
 119. 아로진산나트륨
 120. 아르진산프로필렌글리콜
 121.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122. 아질산나트륨
 123. 아황산나트륨(결정)
 124. 아황산나트륨(무수)
 125. 안식향산
 126. 인식향산나트륨
 127. 암모늄병반
 128. 에리쓰로빈산
 129. 에리쓰로빈산나트륨
 130. 에스민염
 131. 에스민규
 132. 에센마니린
 133. 에센류
 134. 염산
 135. 염화마그네슘
 136. 염화암모늄
 137. 염화칼슘
 138. 염산
 139. 용성비타민P(에칠헤스페리딘)
 140. 유동파라핀
 141. 이노시톨
 142. 5'-이노신산나트륨
 143. 이산화탄소
 144. L-이소로이신
 145. 이소치오시아네이트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
 146. 이온교환수지였다고 인정 되는것은 제외한다)
 147. 인도올및그 유도체
 148. 인산
 149. 자당지방산에스테
 150. 젖산
 151. 젖산철
 152. 젖산칼슘
 153. 제1인산나트륨(결정)
 154. 제1인산나트륨(무수)
 155. 제1인산암모늄
 156. 제1인산칼륨
 157. 제1인산칼슘
 158. 제2인산나트륨(결정)
 159. 제2인산나트륨(무수)
 160. 제2인산암모늄
 161. 제2인산칼륨
 162. 제2인산칼슘
 163. 제3인산나트륨(결정)
 164. 제3인산나트륨(무수)
 165. 제3인산칼륨
 166. d-주석산
 167. b1-주석산
 168. d-주석산나트륨
 169. d1-주석산나트륨
 170. d-주석신수소칼륨
 171. d1-주석신수소칼륨
 172. 지방산류
 173. 지방산프로필렌글리콜
 174. 지방족 고급알데 힌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75. 지방족 고급알칼류
 176. 지방족 고급탄화수소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77. 질산나트륨

178. 질산칼륨
 179. 치아염소산나트륨
 180. 차아황산나트륨
 181. 칠 클로로휘린나트륨
 182. 초 산
 183. 초산나트륨(결정)
 184. 초산나트륨(무수)
 185. 초산미닐수지
 186. 초산에칠
 187. 지오알콜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88. 치오에델류
 189. β -카로친
 190. 카아부시메칠텔루로오스나트륨
 191. 카아부시메칠텔루로오스칼슘
 192. 카세인
 193. 카제인 나트륨
 194. 탄산나트륨(결정)
 195. 탄산나트륨(무수)
 196. 탄산마그네슘
 197.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198. 탄산수소암모늄(중탄산암모늄)
 199. 탄산암모늄
 200. 탄산칼륨
 201. 탄산칼슘
 202. 탈 크
 203. 텔렌케 탄화수소류
 204. DL-트리프토фан
 205. L-트리프토판
 206. 파라옥시 안식향산부칠
 207. 파라옥시 안식향산에칠
 208. 파라옥시 안식향산프로필
 209. 파라옥시 안식향산이소부칠
 210. 파라옥시 안식향산 이소프로필
 211. 판토네신나트륨
 212. 판토네신칼슘
 213. 베놀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14. 베놀에델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15. L-베닐알라닌
 216. 포리부텐
 217. 포리아크릴산나트륨
 218. 포리이소부칠렌
 219. 포리인산나트륨
 220. 포리인산칼륨
 221. 표백분
 222. 프로피온산 나트륨
 223. 프로피온산 칼슘
 224. 프로필렌 글리콜
 225. 프탈산다부칠
 226. 피로인산나트륨(결정)
 227. 피로인산 나트륨(무수)
 228. 피로인산칼륨
 229. 피페로닐부록사이드
 230. 합성팽창제
 231. 호박산
 232. 호박산나트륨
 233. 활성탄
 234. 황 산
 235. 황산나트륨
 236. 황산동
 237. 황산마그네슘
 238. 황산암모늄
 239. 황산제 1철(건조)
 240. 황산제 1철(결정)
 241. 황산칼슘
 242. 후말산
 243. 후말산 1나트륨
 244. 2-(2-후릴)-3(5-니트로-2-후릴)아크릴산아미드
 245. 홀후랄및그 유도체(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46. L-히스티딘염산염

별지 2

별표 4. 첨가물의 용도구분

품명	용도
삭카린나트륨	인공감미료 또는 합성감미료
3, 2 산화철	합성착색료
식용색소녹색제 3호	
식용색소녹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자색제 1호	
식용색소자색제 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 2호
 식용색소적색제 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 3호
 식용색소적색제 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 1호
 식용색소청색제 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 2호
 식용색소청색제 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 4호
 식용색소황색제 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 5호
 식용색소황색제 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휘린나트륨
 철클로로휘린나트륨
 황산동

베히드로초산
 베히드로초산나트륨
 살리셀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우시안식향산부칠
 파라우시안식향산에칠
 파라우시안식향산이소부칠
 카라우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카라우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과산화수소
 2-(2후릴)-3-(5-니트로-2
 -후릴)아크릴산아미드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베칠텔루로오스
 아르진산나트륨
 아르진산프로필렌글리콜
 카아복시멜칠셀루로오스나트륨
 카아복시메칠셀루로오스칼슘
 포리아크릴산나트륨

베타종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결정)
 아황산나트륨(무수)
 차아황산나트륨

디부칠히드록시톨루엔
 물식자산프로필

합성보준료

합성살균료

합성호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부칠히드록시아니졸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발색제

별지 3.

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영업에 있어서는 실험실에 다음의

(가) 내지 (라)에 열거하는 기본적인 기계, 기구, 시약 및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기계류

품명	수량	(대)
화학천칭	1	
상명천칭	1	
전기전조기	1	
전기항온조	1	
전기회화로	1	
전기곤로	1	
깨스바너	1	
현미경(40배율이상)	1	

(나) 기구류

품명	수량
키일달홀라스크	3개이상
삼각홀라스크(대, 중, 소)	각 5개이상
리비히냉각기	각 2개이상
깔대기(대, 중, 소)	각 2개이상
유발	각 1개이상
유봉	1개이상
속시벨추출기	2개
로처치관	2개
마조니아관	2개
삼각홀라스크(대, 중, 소)	각 5개이상
비카(대, 중, 소)	각 10개이상
환류냉각기	1개
메스홀라스크(대, 중, 소)	각 5개이상
알콜램프	2"
아스페레이다	2"
아린관	2"
홀파펜(대, 중, 소)	자 5"
메스파펜(대, 중, 소)	자 5"
뷰펜	2"
분액깔대기(대, 중, 소)	자 2"
비소시험장치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규격)	2"
네슬라비색판	10"
와일드만홀리스크	2"

(다) 시약류(1급이상)

품명	품명
황산칼륨	염화나트륨
황산동	부철알콜
황산산	아세톤
입상아연	이소아밀알콜
수산화나트륨	주석산
브롬크레줄그린시액	초산에철
메치엘시액	질산
무수에넬	구연산
베트란트시액	초산암모늄
석유에텔	질산칼륨
염산	염화제1석
에칠알콜	요드칼륨
탄산칼슘	초산납
초산납	브롬제2수은
황산나트륨	무수아비산
암모니아수	질산납
빙초산	
염화암모늄	
회발류	
글리세린	
크로로호름	
이리티애이용시액	
판크레아친	
치오황산나트륨	
질산온	
요오드	
수산화칼륨	
파망간산칼륨	
페놀프타레인시액	
기타필요한시약	

(라) 기타

타	
실험대(높이 1미터이상 넓이 1.5미터×2미터)	1대이상
탈지면	적당량
핀셋트	"
수육조(종재)	2대이상
리트머스시험지(1-14)	1상자이상
여과지	100매 1상자이상
금망	2개이상
석면	적당량
양모	"
코로마토그라피용여과지	100매 1상자이상

별지 4.

(1) 빙과제조법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아이스샤벨 제조업〉

① 작업장의 면적은 50평방미터(창고와 생의실은 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원료배합실·제조실·저장실 등이 각각 구획되고 용해조(교반장치가 있는 것) 여과기·균질기·살균기·저온저장조·동경기·경화기·충진기·포장시설(봉의 삽입 및 제조장 외에서 판매하는 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아이스케이·아이스캔디 제조업〉

① 작업장의 면적은 30평방미터(창고와 생의실은 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원료배합실·제조실 등이 각각 구획되고 용해조(교반장치가 있는 것) 여과기·저온저장조·충진기·포장시설(제조장외에서 판매하는 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3) 두부류 제조업

① 작업장 면적은 30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수도전·침적조·마쇄기·압착여과기·가열솥·두유저장조·성형성자 등 두부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등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③ 유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탕조 등 필요한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과자류 제조업

① 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즉석 판매를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된 면적에 불구하고, 상당한 넓이의 작업장과 객실이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기구류가 생산량에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
카라멜 및 알사탕류: 진공농축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냉각판(하층부 냉각수 순환식)·압연로라 절단기·포장시설 등.

건과류: 혼합기(교반장치가 있는 것)·절단성형기·압연로라, 굽는시설, 포장시설 등.

빵류: 배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발효기·굽

는 시설, 포장 시설 등.

캡류: 혼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압연로라, 사출기, 절단기, 포장 시설 등.

조코렐류: 혼합 배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정련기, 콘체, 방진망부, 저장탱크, 적량주입기(데포지터) 냉각 시설, 포장 시설 등.

유파류: 혼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성형 시설, 유탕조 등.

생파자류: 혼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성형 시설, 굽는 시설.

(9) 식용유지제조업

〈경제 식용유지〉

① 작업장의 면적은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분쇄기, 열처리 시설, 압착 또는 추출 시설, 탈산 시설, 탈색 시설, 탈취 시설, 조장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압착식 용유〉: (참기름 등과 같이 식물성 식용유로 경제의 필요 없이 단순히 즉석에서 착유하여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수수료를 받고 착유하는 행위에 한한다)

① 작업장의 면적은 12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분쇄기, 가열 시설, 압착기, 용기 세척 시설, 포장 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10) 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업

① 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에 정한 종류별로 각각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 기구류가 생산량에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

통조림: 수도전, 원료 선별대, 증자속, 충진기, 퀸체기(2대 이상 그 중 1대는 1분간 60분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자동 또는 반자동(진공권체기), 증기취입식 가열 살균장치, 냉각장치, 보일러(제한 능력은 $\text{cm}^2/\text{당 } 4\text{kg}$ 이상) 등

병조림: 수도전, 원료 선별대, 증자속, 충진기, 젤 전공체기, 살균장치, 냉각장치, 등

③ 원료 및 제품의 실험 검사에 필요한 검사 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11) 다류 제조업

① 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8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 기구류와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흉차류: 각각 구획된 예비 건조실, 유념실, 발효실, 건조실, 선별 포장실 등과 유념기, 절단기, 열풍 건조기, 제품 절단기 등.

레규라커피: 각각 구획된 원두 저장실, 제조실, 포장실 등과 자동 볶음기, 냉각기, 선별기, 저장탱크, 마쇄기, 추출기, 추출액 냄개기, 저장탱크, 고압펌프, 공기가열기, 분무건조기, 포장 시설 등.

인스탄트 커피: 각각 구획된 원두 저장실, 제조실, 포장실 등과 자동 볶음기, 냉각기, 선별기, 저장탱크, 마쇄기, 추출기, 추출액 냄개기, 저장탱크, 고압펌프, 공기가열기, 분무건조기, 포장 시설 등.

분말다류: 형량기, 배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전조기, 채별기, 교반기, 포장 시설 등.

인스탄트 다류: 각각 구획된 성분 추출·농축 실, 배합 실, 포장 실과, 성분 추출기, 배합기, 건조 시설, 성형기, 포장 시설 등.

(14) 청량 음료 제조업

① 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④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액을 회석 소분만을 하는 유산균 음료 제조업소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청량 음료 수의 용기는 150마리미터 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③ 원료 및 제품의 실험 검사에 필요한 검사 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④ 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 기구류 또는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탄산 청량 음료: 수도전, 설탕 용해조, 시료 조합조, 압착 또는 활성 탄여과조, 자동 세병기, 탄산 깨스 발생기, 탄산 깨스 정제 장치, 충진기, 왕관 타전기 등

유기산 청량 음료: 수도전, 원액 조합조, 교반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여과기, 자동 세병기, 충진기, 왕관 타전기 등.

유산균 음료: 각각 구획된 유산균 순수 배양 실, 발효 실, 배합 실, 제조 실 등과 수도전, 항온조, 균질기, 냉각 시설, 여과기, 자동 세병기, 충진기, 원액 운반 용기(원액 전용의 것으로 위생상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 시설 등 다만 원액을 회석 소분만 하는 업소에는 혼합 시설, 여과 시설, 주입 시설이 있어야 한다.

(15) 정류제조업

① 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계기구류와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양조간장: 각각 구획된 증자실, 제곡실, 덧숙성실, 암착여과실, 살균실, 포장실 등과 수도전, 증자관, 제곡용상자, 덧숙성탱크, 암착기, 살균 및 여과시설 등.

화학간장: 각각 구획된 분해실, 암착여과실, 살균실, 포장실 등과 수도전, 분해조, 중화조, 암착기, 살균 및 여과시설 등.

된장, 고추장, 춘장: 각각 구획된 증자실, 제곡실, 혼합마쇄실, 숙성실, 포장실 등과 수도전, 증자관, 제곡용상자, 마쇄기, 숙성조 등

소오스류: 저장조, 침출조, 백효숙성조, 저장조등

③ 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17) 식초 제조법

① 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③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1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합성식초를 제조할 경우에는 조합 및 혼합실은 실내면 전체가 완전히 내산성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 기구류와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하며, 그, 기계 기구류 등이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산성이어야 한다.

양조식초: 각각 구획된 증자실·제곡실·사입실·생초저�장실·정제초저저장실·포장실 등과 수도전·증자관·제곡상자·원료사업조·생초저장조·정제초저장조·펌프·주입기 등

합성식초: 수도전·형량기·혼합조·여과기·저장조·주입기 등

④ 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